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및 본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불임참조
3. 공고기간 : 2020. 04. 01. ~ 2020. 04. 15.(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36-7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1.

오 산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불임참조
3. 공고기간 : 2020. 04. 01. ~ 2020. 04. 15.(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1.

오 산 시

